



보 도 참 고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2. 2. 27.(월)		
담당 부서	장애인정책국	책임자	과장	한영규	(044-202-3320)
	장애인자립기반과	담당자	사무관	방우식	(044-202-3321)

장애인 복지서비스,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

- 언어발달지원(2.13.), 장애인자립자금대여(2.27.) 복지로 신청 도입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2월 13일(월)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에 이어 2월 27일(월)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「복지로(www.bokjiro.go.kr)」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.

○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도 “복지로”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.

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가족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발달진단, 언어재활,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.
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(조손가정)가 등록장애인*인 경우 월 최대 22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한다.

* (장애 유형)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

②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생업,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.
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추천·심사를 거쳐 최고 연 2.0%*의 금리로 10년간 자금을 대여한다

* 2021년 1분기 이전 대출금리는 최고 연 3.0%, 2021년 2분기 이후 최고 연 2.0%로 인하

- “언어발달지원서비스”와 “장애인자립자금대여”의 신청을 위해서는 “복지로 누리집”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·재산 신고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.

* 복지로 누리집 : www.bokjiro.go.kr

- 서비스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“복지로 누리집”의 “서비스 신청 > 화면 따라하기”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-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온라인신청기능 추가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며, “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언어발달지원사업 개요
2.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개요

담당 부서 <총괄>	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	책임자	과 장	한영규 (044-202-3320)
		담당자	사무관	방우식 (044-202-3321)
<언어발달 지원>	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백경순 (044-202-3340)
		담당자	사무관	유운용 (044-202-3350)

붙임1

언어발달지원(바우처)사업 개요 ·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 대상

- (사업목적)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역량 강화
- (서비스 내용) 언어발달진단서비스, 언어재활,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, 수화지도 등
 - * '논술지도', '학습지도' 등 교과목 수업 및 학습지 지도 등 불가
- (지원대상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'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' 등록장애인인 경우(최대 450명 지원)
 - * 양쪽 부모 또는 양쪽 조부모가 모두 해당 장애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
- (지원금액)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22만 원, 소득 기준별 차등 지급

소득 기준	총 구매력		바우처 지원액	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	월 22만 원	=	월 22만 원	면제
차상위 계층 (가형)			월 20만 원	2만 원
차상위 초과 ~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			월 18만 원	4만 원
기준 중위소득 65% 초과 ~ 120% 이하 (라형)			월 16만 원	6만 원
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180% 이하(마형)			월 14만 원	8만 원

- (제공인력)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, 독서지도사, 교사 자격증* 소지자,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

* 교사 자격증 : 초·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, 초등학교·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,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및 준교사, 영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

붙임2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자립과 재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
- (사업주체) 보건복지부, 지방자치단체, 국민은행
- (대여대상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
 - * 금융채무 불이행자, 신용회복 중인 자, 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자 등은 대여 불가
- (융자조건)

융 자 조 건			
목적 및 대출한도(가구당)	대출조건	이 율	융자기간
- 목적 : 생업자금,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, 기술훈련비, 보조기기 구입, 자기계발훈련비, 의료비 등 - 무보증 대출 : 1,200만 원 이하 (단,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,500만 원 이내) - 담보 대출 : 5,000만 원 이하	- 무보증 대출 :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- 담보 대출 : 담보 범위 내	금리 최고 연 2.0% ('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: 금리 최고 연 3.0%)	5년 거치, 5년 분할상환

- (대여절차)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) 신청 → 시·군·구 심사·융자 추천 → 금융기관 방문 및 융자 신청 → 대출 심사 및 실행

기존	변경 후 (2023년 2월 이후)
❶지자체 방문 신청 후 지자체 심사, 추천 과정을 거친 후 ❷금융기관 방문 신청	⇒ ❶지자체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(복지로)신청 이후 지자체심사, 추천 과정을 거친 후 ❷금융기관 방문 신청

※ 금융기관(국민은행)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 결정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